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 취소 및 재산정 등 〉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67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 취소 및 재산정	3
2. 초기창업청년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8

I. 제안경위

2025년 1월 6일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 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해예방활동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지 않고 있음.

이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사업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청년창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9항,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 취소 및 재산정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산재보험의 보험료(이라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감면을 취소하고,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9항 및 제10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 ⑧ (생략)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8항제1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⑨ 제8항제1호 및 제2호----- ----- ----- ----- ----- ----- ---
⑩ 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비율에	⑩ 제8항제3호----- ----- ----- -----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한다.	----- -----.
⑪・⑫ (생략)	⑪・⑫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보험료율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제14조제7항)과 그 외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제14조제3항)로 구분할 수 있는데(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산재보험료율은 그 외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것을 의미함)¹⁾, 산재보험료

-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보험료)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다. 삭제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됨.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²⁾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조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책정할 수 있음. 그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제14조제3항)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제14조제7항)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총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고, 이를 “산재예방요율”이라고 함.

그런데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건설업 및 별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는 제외), 그 밖에 재해예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됨.

이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게 됨.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재해예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비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하게 됨.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그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고 있는 보험연도에 그 활동 인정기간 비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

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표]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시 조치의 대상 비교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시 조치	현 행	개정안
산재예방요율 적용 취소 및 산재보험료 재산정·부과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연도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비율에 따른 산재예방요율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 산정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재해예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 그 밖에 재해예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개정안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는 사업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에 대하여 이미 감면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 교육 등 재해예방활동을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봄.

고용노동부는 현재 재해예방활동 미이행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감면한 산재보험료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용된 감면 혜택이 유지되고 있으나,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은 사업주의 충실한 재해예방활동 이행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감면된 산재보험료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책임 강화하고 재해예방활동 이행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임.

2. 초기창업 청년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의 39세 이하 대표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생략) <u><신설></u>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으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설></u>	제21조의2(산재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으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개정안은 보험료 지원을 통해 초기창업 청년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안전망을 제공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특히, 창업초기기업이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크고 사회보험료가 창업초기기업의 생존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³⁾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경감이 경영 애로 감소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연구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청년 창업초기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는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10인 미만 사업 등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소규모사업으로서 월보수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이 개정안의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송치승, 박재필, 최길웅.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 경감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정책연구보고서 2009.12 (2009): 1-134.

4) 김주미, 임성묵, 이재훈. "창업 중소기업 4대 보험 경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정보화연구, 2014. 11(1), 81 - 88.

[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개요

사업목적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일부지원을 통한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기준	①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 ② 월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①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② (예술인·노무제공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계약당사자(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단,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대해서만 지원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사업주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 지원에 차등을 둘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다른 취약계층 사업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